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73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김정재·서명옥·김성원

박충권 · 김기현 · 김승수

조지연 • 배준영 • 박덕흠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 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 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의2, 제34조의2 및 제38조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 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2(지반침하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복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 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 항"으로 한다.

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 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지하안전평가"를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지하안전 평가"로 한다.

1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통보 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 3.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하 안전정보체계에 제47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경우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통보 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
급안전조치 등) ① ~ ③ (생	급안전조치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
	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
	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 <신 설></u>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
	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
	를 하려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
	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
	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u> <신 설></u>	제34조의2(지반침하에 따른 특별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반복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 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 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 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 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 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 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 3.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 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 ② ~ ⑥ (생 략)

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

<신 설>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 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 전조치 등) ① ~ ③ (생 략) │ 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 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 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관계 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 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 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u><신 설></u>

3. ~ 8. (생 략) <신 설>

	
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유영)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 항

3.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 체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통보 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료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③ (생략)